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2회 임시회(2019. 7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98
----------	-------

2019. 7. 24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강명숙 의원 외 7인

나. 제 안 일 : 2019. 7. 17.

다. 회 부 일 : 2019. 7. 18.

2. 제안이유

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가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장 환경개선, 연료사용량 감축 등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자 책무 구체화 및 이행사항 신설(안 제4조)

-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
-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
-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
-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제정·시행된 이후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사업자에게 책임성을 강조하고 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이행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사업자로 하여금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(안 제4조 제1호)
-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하도록 유도(안 제4조 제2호)
-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도록 규정(안 제4조 제3호)
- 사업 활동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사업자에게 적극적 책무를 규정하여, 구 대기환경보전시책

추진시 민관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
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, 조문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바람직해 보
임. 다만, 사업자에게 규정된 이행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
홍보 및 설명이 다양한 채널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[관 계 법 령]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(이하 "미세먼지등"이라 한다)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활동(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